

■ 법률 칼럼

영주권 신청 중의 고용주 변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스폰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L/C)과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긴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우선 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고용주를 통해 이미 접수되어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직장의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되고 I-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이 가능한 I-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I-140을 I-485와 동시 접수한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다 해



도 AC21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 가능하다면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났더라도 I-140이 승인된 이후이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AC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한 후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면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상악동 증대술

▶ 1425호에서 이어집니다.

상악동 증대술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1990년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에 구멍을 내서 수직적으로 상악도에 뼈 이식을 하여 증대시키는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증대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잇몸을 많이 들어내지 않는 수술법이기 때문에 수술 후 붓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단지 적은 양의 뼈를 증대시키기 위해 다소 큰 수술을 해야 했던 고민을 벗어나게 해준 수술법으로 뼈 증대량이 3mm 정도 필요한 경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직 상악동 증대술은 '오스테오톰'이라는 기구를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넣고 말렛이라는 망치처럼 생긴 기구로 쳐서 상악동 기저부의 뼈를 파절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머리뼈에 큰 충격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 시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 충격으로 귀에 균형을 담당하는 작은 뼈조각이 떨어져 심한 현기증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 이식재를 밀어넣어 발생한 압력을 이용해서 상악동 막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막을 들어올리는 양이나 방향 예측이 어렵고 상악동 기저부의 모양에 따라 시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최근 증대량 조절이나 최소 침습 수술법의 장점을 살린 수술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필자도 몇 년 전 동료 의사와 함께 새로운 상악동 수직증대 수술법을 고안하여 임플란트 전문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이 인연이 되어 다른 수술법을 고안한 분들과 만나게 되어 서로의 수술법을 공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더 나은 수술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렛으로 쳐야하는 수술 과정을 없애고 안전하게 상악동 기저부에 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상악동막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구도 개발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수술 후 불편감을 최소화 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시술 받으신 후 만족하고 계십니다.

보통 상악동 증대술은 아무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급성 상악동염이나 종양과 같은 병변이 상악동에 있는 경우 상악동 증대술을 금기입니다. 급성 상악동염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완화되면 증대술을 시행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 상악동염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악동 증대술 후 급성 상악동염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악동 증대술 시술 후 일시적인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항생제를 이용한 항 감염 치료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악동 증대술은 전문적인 수술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구강외과 의사 치주 전문의에 의해 주로 시술되고 있습니다. 상악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시술법이 좋을지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